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8. 31.

행정재경위원회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26 |
|----------|-----|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8. 18. 강남구청장(일자리정책과)
- 나. 상정의결
-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8. 31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정찬식)

- 가. 제안이유
- 2023년 3월 기획예산과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비 방침 및 2022년 12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개정에 따라 강남구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, 기타 관계법령 개정 및 시설 운영사항 변화로 인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-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(안 제5조 ~ 안 제9조)
 -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추가(안 제2조)
 -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 수정(안 제11조, 별표1)
 - 홍보·판매관 미운영에 따른 관련 사항 삭제(안 22조, 별표2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협동조합 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입법예고(2023. 6. 30. ~ 2023. 7. 23.) 결과, 특기사항 없음
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자문위원회 성격인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하고, 사회적경제 홍보·판매관 운영종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, 이외 관련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¹⁾ 개정¹⁾에 따라 제2조(정의)에 사회적경제조직인 ‘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’를 추가하고, 본 조례 제11조제2항의 <별표1> 및 <별표2> 중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센터와 홍보·판매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임.

1)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3. 31.>

1. “협동조합”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.

2. “협동조합연합회”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.

3. “사회적협동조합”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.

4. 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”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.

5. “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”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.

- 집행기관(일자리정책과)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는 것보다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, 실제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실적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.
- 또한, 해당 부서 의견에 따르면, 서울시와 타자치구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고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비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.
- 최근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개정으로 이중 협동조합 간 연합회 구성 및 운영이 확대될 전망으로 보여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, 해당 자문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수요 대응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지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
- 이외에 해당 부서가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더라도, 현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되고 있어 집행기관 제출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.

| 집행기관 제출안 | 수정 검토 |
|--|---|
| 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</u>이 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<u>되며,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.</u>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<u>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,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, 자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</u></p> <p>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>가.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대표하는 사람</p> <p>나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1명</p> <p>다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③과④ 삭제</p> | <p><u>제6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</u>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,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,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, 자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</p> <p>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>가.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대표하는 사람</p> <p>나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1명</p> <p>다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|

| | |
|--|--|
| <p>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.</p> <p>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⑦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.</p> <p>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9조(위원의 해촉) <삭제></p> | <p>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.</p> <p>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⑦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p> <p>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 <삭제></p> <p>연혁 관리를 위해 <삭제> 표기 유지</p> |
|--|--|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이 강남구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행정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,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 조치가 우선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상설운영 및 활성화가 지속 요구된다고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
 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
제226호

제안일자 : 2023.8.31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수정주요내용

-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, 위원회 관련 기본적 사항을 조항으로 신설 (안 제6조)
-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제7조, 제8조, 제10조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구성 등)” 을 “(위원회의 구성 및
운영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
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
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
소집한다.

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
따른다.

안 제7조, 안 제8조 및 안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|---|--|
| 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이 된다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사회보장과장, 지역경제과장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의 임기는 2년</u>으로 하되 한 차례에</p> | <p>제6조(<u>위원회의 구성 등</u>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</u>이 된다.</p> <p>② ----- ----- <u>되</u>며, <u>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</u>된다.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 :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,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, 자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| <p>제6조(<u>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</u>----- -----.</p> <p>② <개정안과 같음></p> <p>1. <개정안과 같음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개정안과 같음></p> |

한해 연임할 수 있다.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
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
는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
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
원의 임기는 전임위원
임기의 남은 기간으로
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
리하기 위하여 간사 1
명을 두고, 간사는 사
회적경제 육성업무를
담당하는 일자리정책
과장이 된다.

<삭 제>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
리하기 위하여 간사 1
명을 두고, 간사는 사
회적경제 육성업무를
담당하는 부서장이 된
다.

<신설>

<신설>

<개정안과 같음>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
리하기 위하여 간사 1
명을 두고, 간사는 사
회적경제 육성업무를
담당하는 부서장이 된
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
위원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경우 위원장
이 소집한다.

⑤ 이 조례에서 정한
것 외 위원회 구성 및
운영 등에 필요한 사
항은 「서울특별시 강
남구 각종 위원회 설
치 및 운영에 관한 조
례」를 따른다.

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삭 제>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

경우 -----

-----.

<삭 제>

② ~ ⑤ (생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.

<삭 제>

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

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

제9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

<삭 제>

4. 제8조제1항에 해당
함에도 불구하고 회
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0조(위원의 수당 등)
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
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
위에서 수당과 여비를
지급할 수 있다. 다만,
강남구 소속 공무원이
위원인 경우에는 그러
하지 아니하다.

4. 제8조제1항에 해당
함에도 불구하고 회
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0조(위원의 수당 등)
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
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
위에서 수당과 여비를
지급할 수 있다. 다만,
강남구 소속 공무원이
위원인 경우에는 그러
하지 아니하다.

<삭 제>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“(위원회의 구성 등)”을“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”을 “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된다”를 “되며,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일자리정책과장”을 “부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,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, 자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 : 사회보장과장, 지역경제과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<u>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사회적경제</u></p> <p><u>업무 담당 국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되며,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</u></p> <p><u>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.</u>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 :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,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, 자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④ <u>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⑤ <u>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</u></p> |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.

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.

③ -----

----- 부서장 -----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

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직
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

<삭 제>

<삭 제>

4.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0조(위원의 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삭 제>

신 · 구별표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육성·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(제11조제2항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2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30%;">명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남구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(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-15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·판매관의 명칭과 위치</u> (제22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2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30%;">명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·판매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사 (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214-3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명칭 | 위 치 | 강남구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센터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(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-15) | 명칭 | 위 치 | 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·판매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사 (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214-3) | 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육성·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(제11조제2항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2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30%;">명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남구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, 8층 (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-43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<삭 제></p> | 명칭 | 위 치 | 강남구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센터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, 8층 (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-43) |
| 명칭 | 위 치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강남구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센터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(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-15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명칭 | 위 치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·판매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사 (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214-3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명칭 | 위 치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강남구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센터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, 8층 (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-43) | | | | | | | | | | | | |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- 일자리정책과 행정7급 장명후(02-3423-5593)